

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한 인재 육성과 공동체 구현

## 2024년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업무처리기준

2024. 2.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 목 차

I. 사업개요	1
II. 주요 사업내용	2
III. 신규 장학생 선발	3
IV.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13
V. 기타	22
참고 1. 신청자 지원 서류	24
2. 대학원 전일제 과정 증명서 양식	31
3. 해외 대학(원) 학력 서류 관련 안내	32
4. 계속 장학생 관련 서식 자료	33
5.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37
6. 신청인 동의서	46

# 2024년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중점 추진사항

## 1. 추진 기본방향

-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도입을 통해, 이공계 학생 학업 품질기적  
(학사-석사-박사과정생) 장학지원체계 구축 및 학업·연구몰입 환경 조성
- 동 장학금의 위상 제고, 최고 우수 인력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타 장학금, R&D 참여 인건비 등 정부·민간 지원과 중복수혜를 허용  
(생활비성 장학금)

## 2. 2024년 중점 추진내용

- ① '24년도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성 및 개선사항 등을 모니터링 후,  
향후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사업의 질적·양적 확대 추진

- 이공계 석·박사과정 신입생부터 재학생까지 순수 역량 기반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인재의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유입 촉진

② 장학생 선발 분야 마련

- 이공계 연구인력 육성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라 총 17개 선발 분야 마련

\* 4개의 대분류 아래 17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장학금 신청 진행

대분류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	ICT융합연구
중분류	①수학②물리학 ③지구과학④화학	①기초생명 ②분자생명 ③기반생명	①기계 ②건설/교통 ③소재④화공	①전기/전자②통신③컴퓨터·소프트웨어 ④바이오·의료융합⑤에너지·환경 융합·복합 ⑥다학제 융합·복합

- ③ 장학사업 전문기관을 통한 직접 선발로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 선발 분야별 전문가 Pool을 활용한 심사위원회 구성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선발·평가 체계 마련

## ④ 우수 대학원 장학생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 장학생의 자긍심 제고 및 우수인재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장학증서 수여식, 교류행사 등 추진











번호	구분	제출 방법 및 인정 기준	파일 형태
4	입학확인서 및 재학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사신입·박사신입 유형 신청자는 진학 예정인 대학원 입학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확인서는 합격통지서, 입학허가서, 합격증 등 입학 연도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li> <li>- 신청 개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입학확인서를 제출</li> <li>-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이 박사신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증명서로 입학확인서 대체 가능</li> </ul> </li> <li>○ 석사재학·박사재학 유형 신청자는 재학 중인 대학원 재학증명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개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재학증명서를 제출</li> </ul> </li> </ul>	
5	사회기여활동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기여활동 계획서' 작성 후 제출 (<a href="#">참고1 참조</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분야 연구자로서의 진로설계 및 비전, 사회기여계획 기재</li> </ul> </li> </ul>	
6	학업연구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연구계획서' 작성 후 제출 (<a href="#">참고1 참조</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분야 연구자로서의 향후 학업연구계획을 기재</li> </ul> </li> </ul>	
7	기타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활동 실적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a href="#">참고1 참조</a>)</li> <li>○ 장학금 신청개시일 이후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전일제 대학원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소속대학원이 인정하는 자료어야 하며, 소속 대학원의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a href="#">참고2</a>) 양식으로 제출 가능</li> </ul> </li> </ul>	

- 졸업증명서 및 졸업장, 성적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 당시 입력한 정보와 제출 증빙서류 및 소속대학원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4. 최종 선발 확정

##### 장학생 최종 확정

- 장학생 선발 예정자 제출서류 검토 및 최종 장학생 확정
- 선발 예정자가 제출한 자료 최종 검토
- 장학생 선발 예정자 중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 \* 해외대학(원)학위 취득자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서

##### 정부·민간 지원과 중복수혜 허용

- 대학원생 대통령과학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목적이 아닌 생활비성 지원으로, 정부 및 민간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가능
  - \* 장학금 지원, R&D 참여 인건비 등

#### 유의사항

- 신청유형에 따라 입학예정 또는 재학 대학원 정보 입력
  - [석사 신입/박사 신입] 입학 예정대학원\*을 우선순위로 최대 3개 까지 입력 가능
  - \* 신청 시점에서 입력하지 않은 대학원으로 진학할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더라도 최종 장학생 선정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석사 재학/박사 재학] 현재 재학 중인 1개 대학원 정보 기재
- 해외대학(원) 졸업(예정)자 서류제출 시 참고사항( [\[참고2\]](#) 참조)
  - 모든 제출 문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며, 한국어와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 IV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 1. 계속 장학생 지원기준

#### 자격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국내 대학원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
- 학과(부)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 체계 및 '24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 \* 의학계열 일반대학원이더라도, 연구분야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 책임전문위원(CRB, 종분류) 17개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이공계 분야로 판단
- 최소 수업연한 이수 후,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작성에 필요한 학기로 소속대학원이 인정하는 경우 재학으로 판단

#### 심사 방식

- 연 단위로 성적 등 정량 평가 또는 전문분야 심사위원의 연구수행 실적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판단
- 1차로 성적 등 정량적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sup>\*</sup>하되, 기준 미 충족자<sup>\*\*</sup>는 2차로 연구수행역량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판단

\* 1차 성적기준 통과시 2차 연구수행역량 평가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지원

\*\* 최소 수업연한 이수 후, 심사연도 전체를 연구학기로 재학한 자는 성적 심사 없이, 연구수행역량 평가로만 계속 지원 여부 판단

#### 세부 심사 기준

- (성적기준) ①연간 최소 6학점(학기당 최소 3학점) 이상 이수하고, ②심사연도 성적 평균이 백분위 92점 이상 또는 평점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
- 소속대학(원) 기준에 따라, 산출된 심사연도 평균성적이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지원 대상자로 판단

- PASS/FAIL 과목은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성적 산출 대상에서는 제외
- \* 심사 대상 연도 학기 전부(두 학기) 또는 일부(한 학기)를 모두 PASS/FAIL 과목으로 수강한 경우 해당학기는 성적심사 대상에서 제외

학기	이수학점	성적	성적심사
			대상
24-1	3학점	백분위 91점	대상
		평점 3.5/4.5	
24-2	3학점	3학점 모두 PASS/FAIL 과목	비대상

심사		
이수학기	성적기준	최종
기준 충족 (연 6학점)	미충족 (P/F과목 제외한 과목의 연간성적 평균)	미충족

학기	이수학점	성적	성적심사
			대상
24-1	3학점	백분위 91점	대상
		평점 3.6/4.5	
24-2	2학점	PASS/FAIL 과목	비대상
	3학점	백분위 95점 평점 4.0/4.5	대상

심사		
이수학기	성적기준	최종
기준 충족 (연 8학점)	충족 (P/F과목 제외한 과목의 연간 평균성적)	충족

- 심사연도 내 휴학자의 경우, 한 학기 휴학자는 당해 연도 이수 학기를 기준<sup>\*</sup>으로 심사, 두 학기 휴학자는 직전 평가<sup>\*\*</sup> 적용

\* 최소이수학점 기준 3학점으로 적용

\*\* 직전평가가 계속지원 “적합”일 경우, 복학 시 별도 평가 없이 계속 지원

세부 성적 산출 기준	
구분	유의사항
성적 (백분위 및 평균평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수학기: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 - 계절학기의 경우 이수학기로 인정 불가</li> <li>2) 평점: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현</li> <li>3) 백분위점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예시) 백분위점수 91.9점인 경우 91점으로 처리(계속지원기준 미충족)</li> </ol>
이수학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 - 학기별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않음</li> </ol>



## □ 최소 수업연한 이수 후 학위 취득 학기

- 최소 수업연한 이수 후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기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나, 최대 지원 횟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속대학원은 학사원장 학적상태를 “재학(학위취득학기)”로 입력

## □ 휴학

- 해당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또는 “창업휴학”으로 입력

## □ 자퇴 · 제적

- 해당 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자퇴 또는 제적인 경우 장학금 심사 탈락 및 장학생 자격 상실(영구 탈락)
  - 소속대학(원)은 학적상태를 “자퇴” 또는 “제적”으로 입력
  - 단, 정규학기 이수 후 자퇴 또는 제적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 3. 장학금 지급 절차

### □ 지급절차

- (재단→대학원) 학기별(6개월분)로 장학금 지급
- (대학원→장학생) 학기별 장학금을 월별로 안분하여 장학생에게 지급
  - \* 해당 대학의 시스템 장애 등 지급 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월별 장학금 지급 절차 준수 필요

### □ 기타사항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전용계좌 개설 필요
  - 단, 2024년 최초 시행 사업임을 고려, 전용 계좌 개설이 어려울 경우 타 장학사업 계좌사용이 가능하나, 월별 학생 지급 시 필히 “대학원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명시하여 지급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장학생 별 지원금액 산정 완료 후 대학(원)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재단에서 대학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후 발생하는 이자는 대학 수입 처리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목적이 아닌 생활비성 지원으로, 정부 및 민간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가능한 장학금으로 해당 장학금 수혜로 인해 교내·외 장학사업이나 타 연구지원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장학금 지원, R&D 참여 인건비 등

## 4. 장학생 사후관리

### □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및 장학금 반환되는 경우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전액 등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 중단한 경우
  -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선발유형별 계속지원기준 미달시 (석사유형 1회 미달, 박사유형 2회 미달)
  - ▶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지급 중단
-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 ▶ 장학생 자격 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5. 관련법에 의거한 장학금 환수

**□ 개요:**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 · 진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 □ 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2.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방법·범위·기간·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다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4년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시행계획 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359(2024.2.6)호

### □ 주요 내용

- **(환수대상)**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졸업 후** 의무종사 기간 동안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는 자
  - \* 최대 수업연한이 도래하는 경우도 **졸업으로** 판단
- **(의무종사)** **졸업 후** 이공계 산·학·연에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종사하여야 함

총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지급학기 × 6(개월) × 30(일)

#### - 이공계 분야 구분

##### ▪ 이공계 전공

- ▶ 이공계 전공 분야의 판단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 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
- \* 의학계열 일반대학원이더라도, 연구분야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 단별 분류체계」 책임전문위원(CRB, 중분류) 17개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이공계 분야로 판단

##### ▪ 의무종사 인정: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는 경우

###### [공통인정]

- ▶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 ▶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해당 학위취득 후 해당 학과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 산업분야분류표의 이공계 또는 융·복합 분야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 규정」 별첨(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게시)
- ▶ 그 밖에 재단 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공계 분야 종사로 인정되는 경우
  - \* 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에 준하여 취업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 \* 창업의 경우,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준하여 적용

###### [석사과정]

- ▶ 석사학위 취득 후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는 경우
- ▶ 석사학위 취득 후, 다른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취득하기 위해 수학하는 경우

###### [박사과정]

- ▶ 박사학위 취득 후, 다른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취득하기 위해 수학하는 경우



- 장학금 지급 실태: 학생 개인 지급 현황(월별지급 준수여부), 학생 개별 장학금 지급 시 입금자명(수혜 장학 상품명) 등
- 계속 지원기준 적합여부: 제출 서류(전산시스템 업로드 포함)의 업무 처리기준 준수 현황, 증빙 서류 보관 상태 등

협조 및 조치사항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로 교내·외 장학사업이나 타 연구지원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한 현황 파악 시 협조요청
- 점검 결과 장학생 부적격자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조치하고 해당 대학(원)은 매회 실태점검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독 실시

#### 4. 대학원) 의무사항

- 대학(원)은 장학생 추천·지급·관리에 따른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관련 서류의 열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대학(원)은 장학금 지급결과 및 실태조사 관련자료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5. 기타사항

- 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 문의 및 응답
  - 주소: (41200) 대구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5층 우수장학부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사업 담당자’
  - 전화번호: 1599-2290(대표전화)
  - 홈페이지: [www.kosaf.go.kr](http://www.kosaf.go.kr)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  
고객상담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참고 1**

**신청자 지원 서류**

< 서식 1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연구계획서**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이하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 학업연구계획서는 최대 2장으로 작성 (2장 초과된 페이지는 평가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참고) 연구활동내역서에 미처 기재하지 못한 단순 수상내역, 실적 등을 추가 요구하는 바가 아님에 유의하여 본인의 전공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및 연구계획을 기술
- PDF 변환하여 제출(1장에 1Page만), 모아찍기(1장에 2~4Page)는 “제출양식 미준수”로 간주
- 소속학교와 특정인과의 인맥 등을 암시할 수 있는 표현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함
- 마지막 장 하단 자필 서명 필수

학위과정	석사과정 / 박사과정	전공	
연구목표			

전공선택 동기

< 본인 전공을 선택한 동기를 자유롭게 기술 >

학업 및 연구계획

< 학업이수 및 연구계획이 구체적으로 부각되도록 자유롭게 기술 >

학위 취득 후 계획

< 향후 진로 설정 등 학위 취득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부각되도록 자유롭게 기술 >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과장·왜곡 등이 있을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 2. 기타 연구활동 내역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중요도 순에 따라 **최대 5건으로 기재(1줄에 2개의 활동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5개 초과활동 및 증빙 미비활동은 평가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국내외구분: 국제, 국내, 지역, 교내 등 규모 기재

※ 주관기관이 소속학교일 경우는 구체적 명칭이 아닌 교내로 지정

※ 수상 시 연구활동명 및 비고 등에 1위, 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명 기재

일련 번호	국내외구분	연구활동명 (간략한 활동내용 기재)	활동일(기간)	주관기관	비고
1					
2					
3					
4					
5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 과장 · 왜곡 등이 있을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 <서식 3>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사회기여활동 계획서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이하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 사회기여활동계획서는 **최대 2장**으로 작성 (2장 초과된 페이지는 평가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참고) 연구활동내역서에 미처 기재하지 못한 단순 수상내역, 실적 등을 추가 요구하는 바가 아님에 유의하여 본인의 가치관, 꿈, 노력, 계획을 진솔하게 기재
- PDF 변환하여 제출(1장에 1Page만), 모아CreateInfo(1장에 2~4Page)는 “제출양식 미준수”로 간주
- 소속학교와 특정인과의 인맥 등을 암시할 수 있는 표현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함
- 마지막 장 하단 자필 서명 필수

#### 1. 성장 과정 및 사회기여 경험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본인의 가치관 형성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성장 과정과 사회기여 경험이 무엇이고 그 이유 등을 자유롭게 기술

#### 2. 연구자로서의 자세 및 비전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본인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윤리의식이 무엇이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 3. 사회기여계획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수학 과정 종료 후 본인이 소속 공동체 및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바 또는 기여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 과장 · 왜곡 등이 있을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참고2

## 대학원 전일제 과정 증명서 양식

대학원 전일제 과정 증명서

전 공			학 번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위 학생은 우리 대학원 ○○○학과(전공)에 재학중  
 (또는 입학예정)인 전일제 과정에 재학(또는, 입학예정) 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대학 000대학원장(또는 학과장) (직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참고3

## 해외대학(원) 학력 서류 관련 안내

## 1. 해외대학(원) 학력검증 확인 관련 서류제출 안내

- 해외대학 및 대학원에서 발급한 졸업 및 성적(재학) 증명 서류에 대해 아래의 가~다 중 가능한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졸업 및 성적 증명) 서류
  - 나. 주재국 한국 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졸업 및 성적 증명) 서류
    - 영사확인이 불가할 경우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주한 해당국 영사 확인도 가능함
  - 다. 중국 내 학력취득자의 경우 중국교육부 학력 및 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 및 학위 인증보고서([www.cdgdc.edu.cn](http://www.cdgdc.edu.cn))

## 2. 참고사항: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관련 안내

- 가. 아포스티유 협약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임

- 1)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동안 재외공관의 영사가 현지문서를 확인하는 ‘영사확인’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 발생
- 2)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협약 가입국 간 공문서의 원활한 인증을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고 ‘아포스티유’를 발급함
- 3) 아포스티유가 부착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

- 나.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홈페이지([www.hcch.net](http://www.hcch.net))의 Apostille Section에서 협약국가 및 국가별 관련기관 정보 등의 최신자료 조회 가능

**참고 4**
**계속 장학생 관련 서식 자료**

<서식 1>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

선정연도	20 년도 (제 0회)	선발유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소속(대학원)	대학원	학과	이수학기 수
연락처(자택)	주소: (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 * 해외 현지주소 및 연락처도 추가하여 작성		
변경사항 개요			
휴학	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사유		
교환	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사유		
연구 분야 변경	내용	당초	변경
	사유		

본인은 상기와 같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소속 학교 재적증명서(휴학 확인서) 및 관련 증명서 각 1부

<서식 2>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포기 확인서

선정연도	0000년도	선발유형	석사신입/석사재학 박사신입/박사재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소속	대학(원)	학과	학번
연락처(자택)	주소: (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		
포기 사유			
포기연도/ 학기			
<p>본인은 상기 사유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을 포기합니다. 이후 장학금 포기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p> <p><b>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b></p>			

<서식 3>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연구활동 보고서

###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오망)

-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보고서 본문에 도표, 사진 등 실적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 첨부 가능
- **최소 2장 이상으로 작성**
- 작성완료한 보고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 후 PDF파일 형태로 제출

선정연도	20 년도	선발유형	석사신입/석사재학 박사신입/박사재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소속(대학원)		학과/전공	

### ■ 연구 활동내역

- \* 선발 이후 논문, 수상 실적 등 연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
- \* 실적의 발전가능성 및 기대효과, 전공 및 진로와의 연계성, 참여도 및 기여도 등 기술
- \* 소속학교 홈페이지의 이수과목 설명을 단순히 복사 및 붙여넣기 자양

#### <작성예시>

##### ○ 「논문」 실적의 경우 : 아래 표를 포함하여 기재

제재연월일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수준
	저자 (논문표기순)	교신저자 (지도교수)	저자명수				
년 월 일	(저자 이름은 순서대로 모두 기재 본인 이름은 굵체로 표기)						

\* 수준 : 발표된 학술지의 수준을 판단할 만한 사항을 기재할 것, 긴 설명이 필요시 표 밑에 추가 기재  
(예시 : SCI(Impact Factor)를 연도와 함께 기재 요망, 기재 예 : Nature Materials 誌의 경우 SCI IF:  
23.13(2009), SCIE, SSCI, A&HCI,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후보) 등을 기재)

##### ○ 「수상」 실적의 경우 : 아래 표를 포함하여 기재

수상연월일	참가자			대회명	수상명	국내외 구분	수준
	단독/공동 여부	본인역할	팀원수				
년 월 일		(리더/팀원 등)	(단독일 경우 미기재)				

\* 수상명 : 대통령상, 교육부장관상, 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명 기재

\* 수준 : 대회의 수준을 판단할 만한 사항을 기재할 것, 긴 설명이 필요시 표 밑에 추가 기재  
(예시 : 대회 규모(전체 참가자 수 등), 예산 및 본선 여부, 상금을 받은 경우 상금액수 기재)

### ■ 향후 연구계획

\* 현재까지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과 연구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20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라. 본인은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계속 지원기준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혜가능학기, 계속장학금 지원 종료 기준 등 계속 지원기준이 변경 또는 추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내용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장학금 반환 등 동의

### 가.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재단 또는 대학(원)으로 즉시 반환(환수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장학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최대 2년까지 제한

\*\* 학자금대출의 반환은 학적변동 등 대학으로부터 환급되는 반환분을 의미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반환분 상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조항 적용

- ① 학자금 목적 외 사용
  - 학생 자격 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
- ② 장학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대상대학 및 학과, 학적·등록(상태), 성적, 전일제 기준 위반 등)한 것이 발견될 경우
  - 학생 자격 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
- ③ 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 ④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 중단한 경우
  - 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⑤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⑥ 선발유형별 계속지원기준 미달시 (석사유형 1회 미달, 박사유형 2회 미달)
  - 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지급 중단
- ⑦ 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 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⑧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 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나.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장학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

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 「수혜 횟수 누적」

- 반환사유 발생 후 1개월 내에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됨
-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됨(전액 반환 시 수혜횟수 미누적)

## 3.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장학금 반환

본인은 아래의 장학생 자격 박탈사유 및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함에 동의합니다.

-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 ②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중단한 경우
  - 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③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④ 선발유형별 계속지원기준 미달시 (석사유형 1회 미달, 박사유형 2회 미달)
  - 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지급 중단
- ⑤ 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 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⑥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 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4. 신고사항 변경 및 통지효력에 관한 동의

### 가.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자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 나. 통지의 효력

-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2) 신청인이 '가'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제출한 경우로 말미암아 재단에서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신청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5.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가. 부정청구 유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 3) 법령·자치법규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 4)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나. 조사 협조

본인은 신고 및 재단의 정기적인 조사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 및 대학(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불응 및 대응을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다.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본인은 조사 시 입증 및 사건 관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 시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 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본인은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마. 통지

- 1) 본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재단은 본인의 조사·행정처분 및 권리침해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우편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 3) 본인은 우편으로 통지받기 위하여 재단에 제공한 주소와 우편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6. 대학원대통령과학장학금 환수 등에 대한 동의

본인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 변경 및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이공계열 관련된 진학·취업·창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학금의 중

지·환수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무종사 위반에 따른 장학금 중지 및 환수 관련 세부내용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되며, 장학금 수혜 및 의무종사 이행기간 중 환수관련 절차 및 기준이 신설·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7. 이공계열 진로 설정 및 유지에 대한 서약

##### 이공계열 진로 설정 및 유지 서약서

본인은 20년도 대학원대통령과학장학금에 지원하며 장학생으로 선발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졸업 후 이공계열로의 진로를 설정하고 유지하겠습니다.
2. 졸업 후 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 및 의무종사 보고 등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 등에 의거 한국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협조하겠습니다.

20 . . .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